



축산물등급제 시행 13년을 맞이하여

등급기술부 차장대우 황도연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출범 13주년 및 독립법인 창립 1주년을 맞아 축산물등급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1. 축산물등급제도

① 축산물등급판정기준

소·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일본의 등급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실증적으로 적용,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틀을 잡은 것이며, 육류도체 등급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89년 7월 21일부터 모두 11차례의 등급심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도체등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1년 6월 2일까지 일곱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소도체 등급기준

소도체 등급기준은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하여 등급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육량등급은 A, B, C로 하고, 육질등급도 1, 2, 3으로 각각 3단계화 함에 따라 전체 등급수는 10개로 나뉜다.(A1, A2, A3, B1, B2, B3, C1, C2, C3 및 등외)

육량등급은 정해진 산식(算式)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5개 항목을 측정하여 근내지방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가르되 다른 항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한 등급을 내리는 체계로 하였다.

또한 비육도가 매우 낮은 노폐우 도체, 방혈이 제대로 안되고 오염과 손상이 큰 절박도살우 도체, 결합의 정도가 커 절단정도가 심한 도체, 극히 왜소하거나 나이가 너무 어린도체, 기타 외관으로 보아 도체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것을 등외등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 돼지도체 등급기준

돼지도체 등급기준은 육량과 육질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체중량 범위별 등지방두께 정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하되, 도체의 균칭

(均稱), 비육상태, 지방부착상태, 마부리, 고기의 조직감, 육색, 지방과 질, 근내지방도 등을 검사하여 최종 판정토록 하였다.

• 도체등급기준의 개정경과

소·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안)은 농림수산부가 처음 승인('92. 6. 22)한 이래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최초로 마련된 등급기준의 적용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2차와 제3차 및 제5차는 돼지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등급별 도체중량과 도체중량별 등지방두께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이루어졌고, 제4차 개정은 소의 출하체중이 늘어나고 거세비육이 확대됨에 따라 개선된 육질을 등급과 가격에 반영, 육질개선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자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6차 개정에서는 등급판정결과의 객관화를 위해 등급판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7차 개정에서는 소성숙도 기준을 완화하여 3살이상의 암소도 육질이 좋을 경우 1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우 암소 조기 출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였다.

②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실적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에서 육류등급사업이 시범실시된 '92년 7월 1일 이후 축산물등급제도는 개정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농림부고시 94-63)」이 제정된 '94년 11월 22일까지는 행정조치로 수행되었다.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이 고시되면서 등급을 받은 축산물의 거래지역, 종류와 형태, 등급판정확인서 비치, 도축장 경영자의 협조사항 등이 명문화,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물등급제가 본격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소도체 '92년부터 '95년에 걸쳐 광역시 중심으로 등급 거래지역을 고시하였고, '96년 7월 1일 이후 등급 거래지역으로 반출하는 도축장 소재 시·군

에 대해 그 지정을 확대해 온 결과 인천광역시와 울진군 및 강화군, 경상북도 울진군 및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도체 등급판정의무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등급판정두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95년에는 도축두수의 30%인 230,262두를 판정하였으나 2001년에는 도축두수의 99.7%인 727,415두를 판정하여 양적으로는 도축두수대비 등급판정두수가 약 100%에 이르는 성장을 하였으며, 질적으로도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이 '95년 12.8%에서 '99년 18.9%, 2001년 29.9%, 2002년 7월누계는 무려 34.4%까지 증가하였다. 육량 A등급 출현율 역시 '95년 18.2% 이던 것이 점점 증가하여 2002년 7월 누계는 41.5%까지 증가한데다 한우 수소 시세율도 34.1%로 증가하였다.

돼지도체도 '92년부터 '95년에 걸쳐 광역시 중심으로 등급화 거래지역을 고시하고 이후 '99년 1월에는 도청 소재지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그리고 2000년 10월에는 전국의 시(市)지역에 대해 각각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전국의 시단위 이상 행정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등급판정수수로 징수 및 소도체와의 등급거래지역 형평성 등을 들어 2002년 10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에 도축두수 대비 100% 가까이 등급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의무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등급판정두수도 증가되었는데 '95년에는 도축두수의 49%인 4,992,000두에서 2001년에는 97%인 13,817,000두를 판정하였다.

3 연구개발사업 추진

소·돼지도체 등급판정사업 외에 업무영역의 확대 및 축산물등급제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시범사업 또는 연구중인 사업에 대해 알아 보고자한다.

•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

2000년 4월 농림부가 계란등급제 도입방안을 검토 하도록 함에 따라 2001년 3월 14일에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및 계란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비교시험 및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에는 계란등급제 관련 미국 연수를 다녀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12월 12일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 7월 1일에는 (주)가농바이오 및 공주남산양계영농조합 집하장, 8월 12일에는 서울경기양계조합 용인집하장까지 확대하여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등급판정 집하장 및 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돼지육질(냉도체)등급판정 시범사업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제의 추진 배경으로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 상위등급(A·B등급)의 출현율이 2001년도에는 67.2%까지 상승하였으나, 물돼지고기(일명 PSE고기)의 출현빈도도 상당히 높아졌다. 물돼지고기는 돼지고기 소비와 수축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통해 물돼지고기를 선별하기 위해 '02년 4월 15일부터 4개업체(대상농장(충북 음성), 농협김제(전북 김제), 농협나주(전남 나주), 진일산업(경남 진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육질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물돼지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평가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부분육등급표시 시범사업

1997년도 한우산업발전대책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육 도매시장 개선전에 대해 2000년 10월 관계관 회의를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및 우리소가 합동으로 부분육 유통 관련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을 2001년 3월 15일 고시하였다. 우리소에서는 2001년 7월부터 도매시장, 식육가공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농 고시내용과 부분표준규격 유통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표준규격품 생산 희망업체 및 상장희망 도매시장을 조사하여 2002년 2월 20일 안양 소재 협신식품을 필두로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부분육 상장·경매사업을 추진중이다.

상장하는 부분육의 등급표시 및 정형 등에 대해 생산업체와 도매시장 및 종매인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소의 등급판정사가 상장을 희망하는 육가공업체에 나가 부분육등급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닭고기등급제 시범사업

축산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87호, 2001.6.19)에 닭고기등급판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부는 우리소에 2000년 5월 25일 닭고기 및 계란의 품질등급 및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2001년 9월에는 계란등급연수와 병행하여 미국의 닭고기 등급판정을 참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닭고기 등급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 관련기관 업무협의회, 도축장 및 닭고기 유통실태조사, 닭고기 등급판정사 양성 및 기준(안) 적용을 위한 현장실증시험 등을 통해 닭고기 등급제를 준비중에 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닭고기 등급판정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거쳐 기준과 거래지역을



고시하고 닭고기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

•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사업

축산불등급판정소에서는 등급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인력절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돼지도체 기계판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적 등급판정 수용산식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했다. 동사업은 전문가회의에서 시험결과에 대해 검증 및 인정을 받았으며 기계적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기계적 등급판정 승인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되어 2차 시험에서 얻어진 수용산식을 이용한 기계적 등급판정기준(안) 설정하여 승인요청 및 고시할 예정이며, 기계적 등급판정 희망업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계판정을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④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의 변화

축산물등급판정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인력과 소요예산도 비례해서 늘어났으며, 이의 관리·운영체제도 그 기틀을 잡아왔다. 인력과 조직은 제도 도입시기('89)에 8명의 팀으로 출발한 이래 정원 213명의 2부1실5팀10지소(2002.6)로 확대되었다. 등급판정사용시자격은 육류의 정확한 등급판정이 중요하므로 객관성, 공정성,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갖춘 수 있도록 축산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로 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수행 조직은 '89년 8월 9일에 육류등급사업부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의 내부조직으로 설치된 이래 아홉 차례의 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소관으로 있던 기간('89. 8. 9 ~ '94. 11. 30 ; 5년 3개월 21일)에 2회, 축협중앙회 소관으로 있던 기간('94. 12. 1 ~ '00. 6. 30 ; 5년 7개월)에 4회,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옮겨지면서 1회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2001년 7월 27일 독립법인으로 발족한 이후에도 3회의 개편이 있었다. 조직개편의 주요인은 사업시행지역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체제 마련에 있었다.

⑤ 정부위탁사업

• 고급육생산 촉진을 위한 우수축출하포상금 지급

우수축출하포상금은 등급제도의 조기 정착과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축 출하자를 대상으로 '93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축협중앙회(기금관리부)에서 포상금업무를 담당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판정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처리 차원에서 '95년 7월부터는 축협중앙회의 포상금지급 업무도 축산물등급

판정소에서 맡게 되었다.

'94년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실제의 가축사육 농가로 제한, 농·축협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거나 가축 자가사육증명서를 구비한 직접출하 농가에만 지급하였으나 실제 농가증명이 쉽지 않은 데다가 등급제도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해 '95년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농가여부를 불문하고 출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대상가축에 있어서 초기에는 안·수를 불문하고 A1 또는 B1등급을 받은 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한우의 번식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95년부터는 수소 또는 거세우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01년도는 수소의 거세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거세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우리축산물 홍보

우리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축산물의 브랜드화 정도를 평가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그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진인도록 할 목적으로 농림부가 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을 기획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이 브랜드전을 실무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000·2001우리축산물브랜드전」추진위원회 집행부로서 추진협의회·전시참여업체 유치설명회·참가업체 전시요령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정책당국과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2000·2001우리축산물브랜드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브랜드전은 개최결과 우리축산물브랜드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우리축산물의 우수성 및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2우리축산물브랜드전도 우리소 주관으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농협무역센터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2.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성과

① 생산부문

등급제의 운영으로 생산부문에 서 거둔 성과로는 ① 등급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되면서 과거의 물량 중심의 단순했던 경영사고에서 품질을 같이 생각하는 복합 경영 사고로 전환, 일반화되었고 ②과거의 저조했던 수가축의 거세율이 높아졌으며 ③고급육 생산 및 출하 정보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조직의 확대

가 유도되고 있다. 또한 ④등급판정결과를 생산경영에 활용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 품질향상에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으며 ⑤축하채증이 증가함으로써 육류유통의 규격화와 고품질육 생산 증가에 기여하고 ⑥이와 같은 성과들은 총체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② 유통부문

등급판정제의 운영에 따라 ①과거의 생축유통 중심에서 지육유통으로, 나아가 부분육 유통으로 유도되고 있으며 ②돼지도체의 2분화 ③냉장육 유통 정착 ④육질저하를 초래하는 급수행위의 근절 ⑤등급판정확인서 활용에 의한 유통의 투명성 제고 ⑥등급에 따른 가격정산기반 조성 등 유통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⑦이와 같은 성과 등은 총체적으로 축산물유통 발전의 견인차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③ 소비부문

육류등급제는 육류소비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 ①지불가격에 상응하는 품질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②용도에 따라 그에 알맞은 부위를 선별 조리하는 육류 소비의 상식화 여건을 조성하며 ③이러한 바탕위에서 국내산 육류의 고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축산물등급판정사업 발전방향

축산물등급제도는 축산물유통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어떻게 자리잡음을 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① 제도운영사업의 범위확대

현재 소·돼지도체 등급판정을 주종으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들 도체의 부분육화 및 소매단계로까지의 등급이행 관련사업으로 확장 발전시킴과 아울러 현재 도입단계에 와 있는 닭고기 계란등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 축종을 늘리면서 현행의 기능적 등급판정업무 수행을 기술적 품질관리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등급판정소 재정자립화

우리 축산업이 수입 자유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축산물등급제가 1989년에 도입되었다. 그동안은 정부지원(재원 :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고, 현재 소·돼지 도체에 대하여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나,

도체등급은 부분육 유통을 통해 소매단계까지 그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란과 닭고기 등으로 그 품목을 확대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 수행할 과제가 많고, 사업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축산물등급제도 운영지원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의 운영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축산물등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제도운영의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소비비용의 일부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③ 사육 신축

축산물등급판정소(구 농협 사료검사소) 사육은 건물이 노후되고 유명 축산물브랜드의 전시 및 각종 홍보·교육 등 등급판정기능 발전 추진에 있어 협소하여 농림부의 예산지원하에 연건평 1,000평(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사육을 신축키로 하고 2002년 3월에 기공하여 200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동 사육은 등급판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외에 브랜드축산물시범판매장, 축산물등급제 등 축산물유통관련 교육·홍보관, 양계산물실험실 및 등급판정사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교육·홍보의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④ 등급판정기술력제고 프로그램개발 활동

등급판정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오차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연마해야 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일부 특성상 한 장소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영상을 통해 등급판정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시험적용중에 있다.

⑤ 축산물등급관련 종합정보제공

소·돼지의 등급판정을 기초로 결정된 등급별 거래가격은 생산·유통·소매지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취지에 맞게 우리소의 전산인프라를 이용 2002년 8월 1일 현재 전국 14개 도매시장·공판장 중 10개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시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나머지 4개 도매시장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등급별 가격동향, 축산물 생산정보, 축산물이용상식 등을 생산 유통 소비자 모두에게 신속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m)를 다양화하고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